

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2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12. 23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12. 23 (제59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 안 자 : 재무과장 정 부 응

나. 개정사유

- .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에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.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 (안 제11조의 2 신설)
 - 지방세에 관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둔다.
 -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- 화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.
 -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허길중)

- 동조례 개정안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등과 비과세 감면 신청 반려등 지방세 과세전에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0조가 개정됨에 따라,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서,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론요지

" 생 략 "

6. 심사결과

" 원안가결 "

첨 부 : 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(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화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신 설)

제11조의2 (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)

①지방세에 관한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 전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다만,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화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,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